

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

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- 다 음 -

1. 관련근거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의2, 「금강대학교 학칙」 제15조
2. 지원 대상자 및 제외자
 - 가. 대상자 : 복학·수강신청·미등록 등으로 제적된 자,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·퇴학한 자, 기타 학칙 또는 규정 미 준수로 제적된 자. 단,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
 - 나. 제외자 : 학칙 제50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, 학칙 제28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한 자가 다시 동 28조 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
3. 재입학 신청기간 : 2019. 1. 30(수) ~ 2. 12(화), 17:00
4. 일정 및 제출서류
 - 가. 일정

구분	기간	비고
지원서 제출	2019. 1. 30(수) ~ 2. 12(화), 17:00	입학관리팀 제출
재입학 사정	2019. 2. 15(금)	학부심사 및 입학관리팀
재입학자 명단 발표 및 등록안내	2019. 2. 20(수) ~	입학관리팀, 경영지원팀 (협조: 교무지원팀, 학생지원팀, 기숙사)
재입학 허가일	2019. 3. 4(월)	

- 나. 제출서류
 - 1) 재입학 지원서 1부
 - 2)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
 - 3)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
5. 유의사항
 - 가.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
 - 입학당시 대학의 모집단위(학부, 전공)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대학의장이 학칙이 정하는 재입학년도별 대학의 모집단위(학부, 전공)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
 - 나.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(관련서류 제출)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
 - 다.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
6. 기타 문의 사항은 입학관리팀 041-731-3050

2019. 1. 30

금 강 대 학 교 총 장